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9. 28.(월) / 총 6매(본문3, 참고3)	
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정책과장 주종완, 주무관 김민태, • ☎ (044) 201-4962, 4597 • 건설산업과장 김광림, 사무관 김학원, 주무관 안응철 • ☎ (044) 201-3509, 3511 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·산하기관 건설현장 2,854곳 모두 체불액 없어

- 임금직접지급제 효과 커... '18년 추석부터 체불 0원 연속 달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(7개)과 산하기관(6개)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, 하도급 대금, 기계 대금,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-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, LH·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,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,
 - 점검결과, '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'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* ('20) 설 0원 ← ('19) 설·추석 0원 ← ('18) 추석 0원 ← ('18) 설 92억 원 ← ('17) 추석 109억 원, 설 93억 원 ← ('16) 추석 176억 원, 설 223억 원

< 체불 점검 개요 >

- ▶ 점검 기간: '20. 9. 1. ~ '20. 9. 11.
- ▶ 점검 대상: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,854개소
 (지방국토관리청·지방항공청 /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공항공사)
- ▶ 점검 방식: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

□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.

○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“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·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”였다고 언급하며,

-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*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,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,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* (임금직접지급제)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, 건설사가 임금,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

○ 특히,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, 임금을 제때,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「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(‘20.5)」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-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어도 임금·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하여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고, 발주자가 원·하도급사가 아닌 자재·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금년 내에 구현하여 ‘21.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며,

-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금년 내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 적용될 계획이다.

- 또한, 적용 공공기관(지방공기업 등 포함) 및 대상공사(5→3천만원 이상)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확대는 ‘20.10월부터, 대상공사 확대는 ‘21.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민태 주무관(☎ 044-201-3511), 임금 체불 관련은 건설산업과 안응철 주무관(☎ 044-201-35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기관별 실태점검 결과

(단위 : 개, 억원)

구 분	하도급대금 체불					임금 체불
	현장수	계	공사	자재	기계	
합 계	2,854	0	0	0	0	0
국토청(5개)	644	0	0	0	0	0
항공청(2개)	0	0	0	0	0	0
한국도로공사	303	0	0	0	0	0
토지주택공사	1,336	0	0	0	0	0
한국철도공사	370	0	0	0	0	0
국가철도공단	45	0	0	0	0	0
한국항공공사	72	0	0	0	0	0
인천국제공항	84	0	0	0	0	0

참고 2

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

(단위 : 억원)

구분		하도급대금 체불액	임금 체불액	총 체불액
'20	설	0	0	0
'19	설·추석	0	0	0
'18	설	89.1	2.8	91.9
	추석	0	0	0
'17	추석	106.4	2.2	108.6
	설	86.5	6.5	93
'16	추석	167.8	7.9	175.7
	설	214.6	8.2	222.8
'15	추석	284.5	13.1	297.6
	설	467.6	9.2	476.8
'14	추석	238.4	14.9	253.3
	설	606.4	74.0	680.4

□ 추진배경

- 공공현장 체불 예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발표('17.12)
 -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즉시 적용하였으며('17.12~), 건산법 개정('18.11)을 통해 **쏘 공공공사로 의무화**('19.6월 시행)
 - * 건설사가 임금·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,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
- 건설사 계좌압류에도 임금·대금이 지급되도록 지급시스템 개편,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「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」 마련('20.5.15)

□ 개선방안

- (시스템) ①건설사 계좌 압류에도 임금·대금을 지급, ②선금·선지급금 흐름 투명 관리 ⇨ 개선된 기능을 '21년부터 쏘 공공공사에 적용
 - (조달청 : 하도급지킴이) 건설사 압류로부터 임금·대금을 보호하고, 선금·선지급금 흐름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완비
 - (중기부 : 상생결제시스템) 선금·선지급금도 예치계좌를 통해 관리 되도록 개선('20.下), 압류금지 계좌로 지정(상생협력법 개정, '20.下)
 - (국토부 : 철도공단 시스템) 특수계좌(e계정)를 신설하여 임금·대금 직접 지급, 선금·선지급금 관리('20.6 시범적용 → '21년 전면도입)
 - (행안부 : 지자체 자체시스템) 자체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기관도 개편 취지에 맞게 시스템 별 개선('21년부터 개선기능 적용)
- (제도개선) 적용범위(기타공공기관 등)·대상공사 확대(5→3천만원 이상), 선지급금 시스템 이용, 선금으로 임금지급 금지 등 운영기준 강화

□ 과제별 추진상황

① [조달청] 하도급지킴이 📄 3건 중 2건 완료(적용 중), 1건 연내 완료

- ① (노무비 압류방지 : 완료) 건설사 명의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건설사 공동계좌에서 분리, 압류대상에서 제외
* '20.6월 시스템 개발 완료, '20.9월부터 전 현장 적용 중
- ② (선금·선지급 유용방지 : 완료) 전체 자금 흐름 모니터링 기능 완비
* '20.6월 시스템 개발 완료, '20.7월부터 적용 중
- ③ (자재·장비 대금 압류방지 : 추진 중) 발주자가 원·하도급사가 아닌 자재·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가능한 기능 구현
*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, '21.1월부터 전 현장 적용 예정
※ 자체 시스템을 사용 중인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도급지킴이 사용 예정

② [철도공단] 자체 시스템 📄 10월 시범적용, '21년 전면 시행

- 자체 회계시스템과 연계 완료('20.9월) 후 서해선 현장부터 적용하여 '21.1월에 전 철도현장(4.1조원)에 적용 예정으로 타 기관 확대 추진

③ [중기부] 상생결제시스템 📄 연내 완료

- 선금·선지급금 유용방지 기능 구현 중('21.1 시행)
※ 제주시 등 자체 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발주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, 압류방지 등 시스템 개편 중

④ 제도개선 📄 정상 추진 중

- (적용대상 확대) 적용 공공기관 및 대상공사(5→3천만원 이상)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중(10월 완료 예정)
- (운영상 미비점 개선) 발주자의 선금 관리의무 명시 등 시스템 사용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세부운영기준 개정 완료('20.7)